제 1366 호

1987.6.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얼 보 헌
편집인 : 공 보 관 김 성 순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95-3337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2191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3

제 2192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4

◎ 규 칙

제 2184 호 :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관계공무원표적직정에관한 규칙중개정규칙 6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46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6
제 461 호 : 석고기및택지고가연동가격 7

◎ 구 고 시
구로구제 26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허가 7

◎ 공 고
제 404 호 : 전기공사업체영업정지처분 8
제 409 호 : 목수제 4 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완료 8
제 412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변허취소 9
제 414 호 : 목교구역제 1 기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물워한공람 9
제 415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지정취소 .....

◎ 구 공 고
은평구제 83 호 : 문인재교부및폐기 10
강동구제 62 호 : 직인사용승인 12

◎ 예 규
제 497 호 : 서울특별시채비지관리및처분규정중개정 12

◎ 사 령

공　포　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6.2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최열곤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 2191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제 2 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 제 2 조 제 3 항 제 2 호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를 제 3 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임용권자) 별정직 공무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제 3 조를 제 4 조로 하고 동조 제 1 항 및 제 2 항중 "시장"을 삭제한다.

제 4 조를 제 5 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임용절차)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를 삭제한다.

제 6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포　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교육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6.2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최열곤

◎서울특별시조례제 2192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제 1 조의 2 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하고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의 2 (적용범위) 법제 2 조 제 3 항 제 4 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1 조 제 1 항중 "면직시키거나"를 삭제한다.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무구분,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아래표의 "현행직명"란의 직에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각각 이 조례 시행일에 오른편란의 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현행직명	개정직명
선로공 (1종)	보선원 (1종)
건축공 (1종)	건축보조원 (1종)
목공 (1종)	목공원 (1종)
건축보조공 (2종)	건축보조원 (2종)
토석공 (2종)	토석원 (2종)
판공 (2종)	백판원 (2종)
통신공 (1종)	통신보조원 (1종)
전화교환원 (1종)	교환원 (1종)
전공 (1종)	전기보조원 (1종)
난방공 (1종)	난방원 (1종)
기계공 (1종)	기계보조원 (1종)
철도공 (1종)	기계보조원 (1종)
인쇄공 (1종)	인쇄원 (1종)
석판인쇄공 (1종)	인쇄원 (1종)
정비공 (1종)	정비원 (1종)
기계보조공 (2종)	기계보조원 (2종)
도공 (1종)	도장원 (1종)
영사공 (1종)	영사원 (1종)
화공보조공 (2종)	화공보조원 (2종)
영림수 (2종)	영림원 (2종)
원예수 (2종)	원예원 (2종)
보건조무수 (2종)	보건보조원 (2종)
간호보조수 (2종)	간호보조원 (2종)
보조수 (2종)	보조원 (2종)
경비수 (2종)	경비원 (2종)

현행직명	개정직명	현행직명	개정직명
객 품 수 (2종)	객 품 원(2종)	조 거 수 (2종)	사 역 원(2종)
역 무 수 (2종)	역 무 원(2종)	간 수 (2종)	전철목안내원(2종)
사 역 수 (2종)	사 역 원(2종)	조 발 수 (2종)	조 발 원(2종)
철 공 (2종)	사 역 원(2종)	전 달 수 (2종)	전 달 원(2종)
초 자 공 (2종)	사 역 원(2종)	조 리 수 (2종)	조 리 원(2종)
항 무 수 (2종)	사 역 원(2종)	소 방 수 (2종)	소 방 원(2종)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무구분,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직무구분 / 직종별	직명 1종	직명 2종	경노무	근무상한연령
토목	보선원			58 세
건축	건축보조원, 목공원	건축보조원, 토석원, 배관원		58 세
통신	통신보조원			58 세
	교환원			53 세
전기	전기보조원			58 세
기계	운전원, 난방원, 기계보조원, 임체원, 정비원	기계보조원		58 세
화공	도장원, 염사원	화공보조원		58 세
임업		영림원		58 세
		원예원		60 세
보건위생		보건보조원		58 세
간호		간호보조원		58 세
업무보조	재도원			60 세
	타자원			53 세
	전산원, 필기원, 제리원, 사서원, 편집원	보조원		58 세
기타	방호원	경비원		60 세
	현매원	객품원, 역무원, 사역원, 전철목안내원, 조발원, 전달원, 조리원, 소방원		58 세
			사 환	43 세

규 칙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년 6 월 29 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84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관계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제 1 항제 2 호 가목중 "수입금출납원 수도관리과장, 수도공사과장(용산구 및 동작구에 한한다) 공과금과장"을 "수입금출납원 수도관리과장"으로 하고 "분임수입금출납원 수도관리과 및 수도공사과 관리계장, 공과금과 공과금 1 계장"을 "분임수입금출납원 수도관리과 관리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6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340 호('87.5.15)로 변경결정된 다음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윤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6.29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옵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3	176	29	420	가리봉동 대 2-52	가리봉동 광로 19	
변경	대로	3	176	29	420	〃	〃	서부간선도로 접합부분 연결

나.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61호

쇠고기및돼지고기연동가격고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농림수산부 고시 제85-47호, '85. 8.22)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7. 6.29

서 울 특 별 시 장

1.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쇠 고 기(정육 500그람당) 3,300원
돼지고기(정육 500그람당) 1,600원

2. 시행일 : 1987. 7.1 부터

구 고 시

◎구로구고시제 26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61 호('85. 4. 18) 로 변경허가한 도시계획사업 (시장)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6.29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 서울시구로구시흥동 956 번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다.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 464-8
성명 : 대신흥업 대표 최기호

라.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1984. 4.17 - 1987.12.31

마. 변경사유 : 시설면적증가로 인함.

바. 사업계획 :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교
대 지 면 적	3,304.10	3,304.10	
건 축 면 적	497.52	979.38	+ 481.86 ㎡증가
연 면 적	1,987.19	2,265.08	+ 278.89 ㎡증가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주소, 성명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건물의 조서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04 호

전기공사업체 영업정지처분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2 항 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지침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987. 6.29

서 울 특 별 시 장

면허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영업정지기간
2-249	대화전기공사	중구오장동 139-10	이창수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2 항 (면허기준미달)	영업정지 30 일	'87.6.23-'87.7.22

◎서울특별시공고제 409 호

옥수제 4 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완료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3.12.1) 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323 호 ('84.6.2) 로 사업시행인가된 옥수 제 4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기 같은법 제 4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에 필한 공사완료를 공고한다.

1987. 6.29

서 울 특 별 시 장

공 고 요 지

가. 사업명칭 : 옥수 제 4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나. 사업구역 : 성동구옥수동산 2-24 호외 54 필지 76,651.40 ㎡

다. 시 행 자 : 옥수제 4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라. 시행기간 : '84.6.2-'86.12.24

마. 사업시행내역

1) 기존건축물 철거 : 249 동

2) 주택건립

15 층아파트 8 동 900 가구

3) 부대복리시설

상 가 2 동 6,791.06 ㎡

유치원 1 동 650.42 ㎡

노인정 1 동 198.15 ㎡

4) 공공시설 : 동사무소 청사 1 동 (대지 577.50 ㎡, 건축연면적 496.2 ㎡)

· 공원 24,688.80 ㎡

· 도로 (B=6-8m, L=170m) 1,054.50 ㎡

5) 사업비 : 445 억원

6) 시공자 : 극동건설㈜

◎서울특별시공고제 412 호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공고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제 1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7.6.29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취　소　사　유
574	명동전업㈜	박천일	마포구 서교동 467 -2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제 2 항 제 12 조 제 1 항 제 33 조 제 1 항 위반

◎서울특별시공고제 414 호

무교구역제 1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변경을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9 호(83.5.15)로 사업시행인가된 무교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 박만송이가 도시재개발법 제 14 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동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시행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는바, 동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동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피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

1987.6.29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재개발사업의명칭	무교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사업	변 경 없 음
시 행 구 역	중구 무교동 89 일대(13 필지)	〃
시 행 면 적	1,874.5 ㎡	〃
시 행 자	성동구 광장동 산21 워커힐아파트 33 동 702 호 박만송	〃

구 분	기 정	변 경
주된사무소의	중구 북창동 10-4	변 경 없 음
소 재 지	삼흥빌딩 803 호	〃
시 행 기 간	83.5.16 - 87.6.30	83.5.16-90.6.30
사업시행계획서	별첨 (생략)	변 경 없 음
사업시행규약	〃	〃
사업시행설계도서	〃	〃

나. 공람기간 : 87.6.30 - 87.7.30

다.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서울특별시공고제 415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지정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아래 특정 열사용 기자재시공업소에 대하여 지정취소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7. 6.29

서 울 특 별 시 장

아 래

지정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지정품목	위반사항	조 치
112	육성종합설비	김영섭	양평동1가99	1 종	무단폐업	87.6 지정취소
142	신한중합설비	윤경한	문래동3가54-41	〃	〃	〃
171	유림설비공사	이상만	양평동4가227-3	〃	〃	〃

구 공 고

◎은평구 공고제 83 호

관인제판부및폐기

관인규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개각 및 폐기된 관인을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7. 6.29

은 평 구 청 장

1. 관인사용개시일 : 87.7.4 09:00
2. 관인폐기일 : 87.7.3 18:00

3. 관인인영

	신규	폐기
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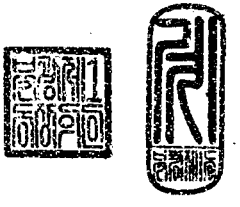	
공인명	불광제 1 동장 (일반사무용) 직인및제인	
인영		
공인명	불광제 2 동장 (일반사무용) 직인및제인	
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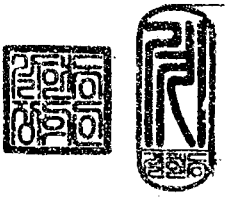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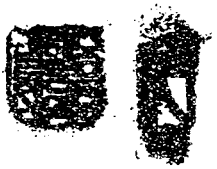
공인명	갈현동장 (일반사무용) 직인및제인	

인 영		
공인명	응암제3동장(일반사무용)직인및제인	

◎강동구 공고제 62호

직 인 사 용 승 인

강동구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강동구 수도사업특별회계 파징업무전용)직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11조에 의거 공고한다.

가. 직인명 : 강동구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직인

나. 사용개시일 : 1987.7.1

다. 관인의 운영 : 아 래

1987. 6.29

강 동 구 청 장

신 조 인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487호

서울특별시 폐비지관리 및 처분규정 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폐비지관리 및 처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7. 6.29

서 울 특 별 시 장

부칙 제3조중

"1986.12.31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를 "1988.12.31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이 유
부칙 제3조(매각 특례에 관한 경과 조치) 제8조 제1항 단서중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된 2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1986.12.31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도가격에서 30%를 공제한 잔액을 실수납액으로 하여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의 범위내에서 년부로 매각할 수 있다.	1988.12.31까지	1) 점유자의 영세성으로 대금납부의 부담 경감 필요 2) 점유 채비지 매각 촉진 3) 구의정리 사업 조기 정산

사 령

◎ 1987년 6월 25일 정제 195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무 서	직 급
박현식	올림픽건축담당관 파견 ('87.7.1~87.12.31)	기술심사담당관	지방건축기사
전석기	〃	종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사보
염두성	〃	〃	〃
전동호	〃	용산구	〃
박용우	〃	강동구	지방건축기원
장택상	올림픽토목담당관 파견 ('87.7.1~'87.12.31)	종합건설본부	지방농림기원보
오춘섭	〃	〃	〃

◎ 1987년 7월 1일 발령 19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 란 백	보건위생과	구획정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양 병 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	지방행정서기
박 부 전	푸나청소년과	〃	지방행정서기보
이 동 욱	시경개발담당관	성 북 구	지방행정서기

◎ 1987. 년 6 월 27일 발령 198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 병 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호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지방전기기사보

◎ 1987 년 6 월 30 일 발령 203 호

성명	발령부서	발령호봉	발령직급	비고
이 윤 행	총무과	2 호봉	지방토목기사보시보	신규
아 병 두	강서구	3 〃	지방보건(환경)기원보시보	
이 교 명	서대문구보건소	4 〃	〃	
임 영 광	관악구보건소	4 〃	〃	
최 화 영	종로구보건소	4 〃	〃	
염 홍 배	구로구	4 〃	〃	
양 병 규	도봉구	4 〃	〃	
정 광 철	용산구	4 〃	〃	
양 경 원	서대문병원	1 〃	지방약사시보	
정 경 자	구로구보건소	1 〃	〃	
감 금 순	강동구보건소	1 〃	〃	
이 미 숙	관악구보건소	1 〃	〃	
이 혜 경	용산구보건소	1 〃	〃	
애 희 순	도봉구보건소	1 〃	〃	
박 애 진	구로구보건소	1 〃	〃	
오 정 균	중구보건소	1 〃	〃	
조 미 경	서대문병원	1 〃	〃	
김 선 숙	관악구보건소	1 〃	지방간호원시보	

성 명	발 령 부 서	발령호봉	발 령 직 급	비 고
이경순	중구보건소	1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신 규
고정희	관악구보건소	1 〃	〃	
허인원	〃	1 〃	〃	
안봉례	〃	1 〃	〃	
이창희	용산구보건소	1 〃	〃	
채진병	관악구보건소	1 〃	〃	
신일철	도봉구보건소	1 〃	〃	
김정옥	아동병원	1 〃	〃	
문윤임	도봉구보건소	1 〃	〃	
김강옥	관악구보건소	1 〃	〃	
이상숙	관악구보건소	1 〃	〃	
이인숙	구로구보건소	1 〃	〃	
유영순	성북구보건소	1 〃	지방간호원	
김미람	아동병원	1 〃	지방간호원시보	
조경섭	관악구보건소	4 〃	지방간호원	
함영희	도봉구보건소	1 〃	지방간호원시보	
김옥인	도봉구보건소	1 〃	〃	
김은미	도봉구보건소	1 〃	〃	
신홍선	시립대학교	2 〃	〃	
박미서	구로구보건소	1 〃	〃	
유점순	관악구보건소	2 〃	〃	
김춘한	구로구보건소	1 〃	〃	
이미순	구로구보건소	1 〃	〃	

ⓒ, 1987 년 6 월 30 일자 행정 20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춘화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퇴직	구로부녀복지관	지방별정직 8 급상당

16-16 제1364호 시 1987.6.29

◎ 1987년 7월 1일 정제 205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홍 승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승임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지방행정주사

◎ 1987년 6월 29일 정제 206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윤 머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9호봉을 급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도 봉 구	지방행정주사
연 익 흠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9호봉을 급함. 문화담당관 근무를 명함.	문 화 담 당 관	〃
박 광 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9호봉을 급함. 구로구 근무를 명함.	구 로 구	〃

해외현장파견교육명령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교육현장	교 육 분 야	파견기간	교육비용	비 고
관광 담당관	지방행정 사 무 관	양석용	구주지역	해외관광 실태	87.7.6 -7.17	참가로서 비 부담	.

서 울 특 별 시 장